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혜 은	· 전 화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장 태 영		044-202-3576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한 상 균	] 선 확	044-202-3232				
특별관리전담팀	담 당 자	이 웅 채		044-202-323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련 보고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을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 종교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학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여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분들께서는 대면 모임 참석을 가급적 미루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모임 전후 공동식사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1 수도권 추가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중	앙재난	안전대칙	Ħ본부(	에서는	수도권	지역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논의하	하였다.					

- □ 서울시는 물류센터, 종교 단체, 학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며, 여의도 공원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5.30)하여 신속한 진단 검사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또한 5월 19일(화)부터 31일(일)까지 관계 공무원, 소비자위생 감시원, 경찰 등으로 합동점검반(2,076반/6,017명)을 구성하여 집합 금지대상업소(유흥시설) 총 2,158개소를 점검하였다.
    - 이 과정에서 31건의 집합금지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중 26건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앞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 □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종교시설(소모임)에 대해 6월 2일(화)부터 6월 14일(일)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해 온 학원·PC방·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 5월 29일(토)부터 6월 1일(월)까지 **총 1,336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이 중 **26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 경기도는 도내 △물류센터 △예식장 △장례식장 △콜센터 등 총 1,586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6월 1일(월) 오후 3시부터 6월 14일(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시간대별 소독 등)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합 금지 조치, 고발, 구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행정조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산발적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의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2 전자출입명부 관련 보고 및 협조 사항

-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Pass)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였다.
  -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시설 이용자는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에서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
  - 방문기록(사회보장정보원)과 개인정보(QR코드 발급회사)는 분산 보관하며,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하다.
- 「전자출입명부」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6월 1일(월)부터 6월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 10일(수)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 목록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통보하고, 의무적용대상 시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를 독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 \* 의무적용대상 기관 중 시설관리자용 앱 미설치 기관 현황 파악
-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카드뉴스** 및 **작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의 **안전성과 정확성, 도입 필요성**을 **안내·전파**할 예정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6월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1,227개소 △콜센터 143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563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대전시**에서는 이슬람사원 2개소를 방문하여 생활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40개소 △학원·독서실 14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PC방 5개소 등 103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학원·독서실에서 거리 두기를 미준수하거나 방역 대장을 미작성(서울·세종)한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PC방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사례(세종)를 발견하여 즉시 개선 조치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80개반, 725명)으로 심야 시간(22시 ~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5,21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4,326개소(82%)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892개소 중 집합 금지 조치를 불이행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 □ 또한,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한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5월 6일(수)부터 국민의 적극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 이를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 재난문자**\*(65회), **TV 자막방송**(3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2,05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 △소규모 종교활동 자제 △비대면 모임 권고 △부득이한 경우 참석 규모 축소 △마스크 착용 등

###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6월 1일 18시 기준, **4,14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65명이 해제되어 확진자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총 **38,888명**이다.
  -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1.0% 설치되었다.
  - 어제(6.1)는 무단이탈자 4명이 물품 구매, 아르바이트 외출 등을 위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유선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고발하기로 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88명**이며, 이 중 7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2개소(2,84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98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6월1일) 입소 201명, 퇴소 257명 /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붙임 > 1. IT기술을 활용한「전자출입명부」도입 방안
  - 2. 감염병 보도 준칙
  - 3.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 붙임1

###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 1 전자출입명부 모델



-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 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생성
  -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O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2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 ①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 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②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 ③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④ (개인정보관리) <sup>①</sup>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 → <sup>②</sup>분산 보관·관리→ <sup>③</sup>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 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처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3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